

고시

사

기안문지

고시제 117호

44-142

(전화번호) 366

제2부서장
8.26

제2부서장

호

시장

[Handwritten signature]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종합계획과장

[Handwritten initials]

결재
1972. 8. 26
[Red stamp]

원안내무관
원본내조필
보관

운영과장
지뭇과장
가로계획과장
업무과장(도시계획계)
시민과장

[Handwritten initials]

각안참조

광우기 72

도시계획법 제2조 1호

도시계획법 제2조 1호
도시계획법 제2조 1호
도시계획법 제2조 1호

발행
1972. 8. 26
서울특별시

제1안 내부결재

1. 주택관리관으로 부원
정리계획에 위한 철거민을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 예정이 있어

2. 도시계획법 제2조 1호
72. 8. 4 당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에 부한 결과
과 같이 시행하려 하여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치: 성동구 개여동 산56-1 외 11필지

나 목적: 무허가 건물 정리계획에 의한 철거민 주거지

다 면적: 9997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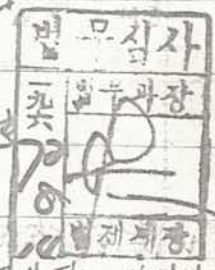
라 시행과: 서울특별시

마 현황: 도시계획상 주거지이며 다른 계획도리가

교차하고 있는 인근에 갈현산성이 위치하고 있음

제2안 모시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17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17 조의 제 1항 제 1호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17 조의 제 1항 제 1호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17 조의 제 1항 제 1호에 의거하여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17 조의 제 1항 제 1호에 의거하여
도시계획법 제 123조의 제 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17 조의 제 1항 제 1호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17 조의 제 1항 제 1호에 의거하여
1972.8.23 서울특별시

등급	류별	번호	목원	면적	기	등	검	비	고
대로	3류	33	30	70	168-11 田	49	田		
소로	2류	1	8	66	산 57-12 林	347-4	田		
"	3류	1	6	78	154-2 田	6 ^m -2	田		
"	"	2	"	39	6 ^m -1	356-2	田		
"	"	3	"	114	4 ^m -9	349	田		
"	"	4	"	28	154 田	358	田		
"	4류	1	4	105	30 ^m -1	251-2	田	10	
"	"	2	"	26	8 ^m -1	251-4	田	19	

등급	류별	번호	목원	면적	기	검	공	검	비	고
----	----	----	----	----	---	---	---	---	---	---

1. 위치: 성동구 개여동 산56-1 외 11필지

2. 목적: 무허가 건물 정리계획에 위한 전세임대주택

3. 면적: 9,997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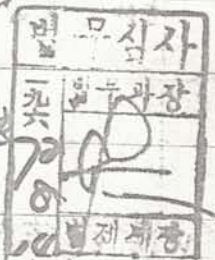
4. 시행자: 서울특별시

5. 현황: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며 다른 계획도로가

교차하고 있고 인근에 김한산성이 위치하고 있음.

제2안 모시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17 조
시행령 제 117 조
시행규칙 제 117 조
도시계획상의 주택지 조성 시설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17 조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결정을

1. 도시계획시설명: 일대의 주택지 조성사업 (주택지 조성사업)

2.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여동 산56-1 외 11필지

3. 면적: 9,997 평

4. 시행자: 서울특별시

가. 가문로시

10-1

대로	3류	33	30	70	168 田	49 田	
소로	2류	1	8	66	산 57-12 林	347-4 田	
"	3류	1	6	78	154-2 田	6 ^m -2	
"	"	2	"	39	6 ^m -1	356-2 畓	
"	"	3	"	114	4 ^m -9	349 田	
"	"	4	"	28	154 畓	358 田	
"	4류	1	4	105	30 ^m -1	251-2 田	10
"	"	2	"	26	8 ^m -1	251-4 田	19



4	26	154 田	258 田
4류	26	30 ^m -①	51- 田
2	26	8 ^m -①	251-4 田

등수	류별	번호	폭원	면적	기	점	종	점	비	고
50	4류	3	4m	61m	30 ^m	①	8 ^m	①		
"	"	4	"	16	산	17-3林	8 ^m	①		
"	"	5	"	54	30 ^m	①	8 ^m	①		
"	"	6	"	102	167	田	30 ^m	①		
"	"	7	"	120	167	田	30 ^m	①		
"	"	8	"	109	4 ^m	②	30 ^m	①		
"	"	9	"	46	4 ^m	②	6 ^m	③		
"	"	10	"	56	167	田	152	菰		
"	"	11	"	36	6 ^m	①	167	田		
"	"	12	"	65	6 ^m	①	4 ^m	②		
"	"	13	"	60	6 ^m	①	151	菰		
"	"	14	"	40	6 ^m	①	6 ^m	④		
"	"	15	"	40	6 ^m	①	6 ^m	④		
"	"	16	"	72	6 ^m	④	4 ^m	①②		
"	"	17	"	113	151	菰	145-1	田		
"	"	18	"	20	4 ^m	①②	4 ^m	①②		
"	"	19	"	34	4 ^m	①③	148	田		
"	"	20	"	21	4 ^m	①④	142	菰		
"	"	21	"	36	4 ^m	①④	146-2	田		

菰
 物
 186
 186
 186
 186

나 아동공원 조성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아동공원	성동구 거여동 31번지	330평	

다. 주차장 및 쓰레기 적화장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주차장 및 쓰레기 적화장	성동구 거여동 산56-1	52평	

별첨도면참조 (도면생략)

~~1972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시각~~

제3안

수신 : 건설부 장관

제목 : 동건

1. 당시 무허가 건물 정박을 위해 별첨 도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내각의 전제인 필경 내각의 결정은 위법}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철거민 이주 정착단지~~) 시설을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보고 함기다.

첨부 : 도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 1부

제4안

수신 : 주택관리관 (참조 : 개량외장) 발신 : ^{도시계획국} 국공

1. 개량 430-1048 (72. 8.3) 이 관리사항 임기다

2. 기와이서 02- 8.3 ^{일면의 주택지 조성사업} 한창한 ^{의뢰한} 시설 결정 ^{요청} 사항은

별첨 도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시설정지되었기 통보함기다

1. 개관 430-1048 (72. 8. 3)

발신: 시장

2. 귀국비서 72. 8. 3

일반의주도지도청사업
산정할 - 시설 결정
의뢰한
운전사함은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시설결정되었기 통보함이다.

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제5안

수신: 총무처장관 (서울시 공보실장) ¹³²¹ 발신: 시장 (과장)

제목: 관(시)보 게재 의뢰

1. 아래와 같이 관보(시보) 게재를 의뢰하고자 관(시)

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구분 : ^{공시} 시장(관)의 결정(관리)사항

나. 관(시)보 게재건명 : ^{시장(관)의 주택지 조성사업(시설)}

다. 법규 근거 :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

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제6안

수신: 상동구 ¹³²¹ (장르: 시민봉사실, 기록과장, 산업과장, 세무(과장))

제목: 통지 발신: 시장

1. 귀국 관세 기여동 산(6)의 11필지 일원에
대하여 당시 도시계획시설 (일반의 주택지 조성사업(시설))
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보
하기 기록증명 발급 사무 및 제반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기 바랍.

2. 귀국 비차도면은 정리하고 귀국 폐시판과 관한
등사무는 폐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공란에 공하기 바랍.

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제 7안

수신 : 녹지과장 . 시민과장 . 민방위과장 (반신 · 도시계획과장) ^{-13리}

제목 : 통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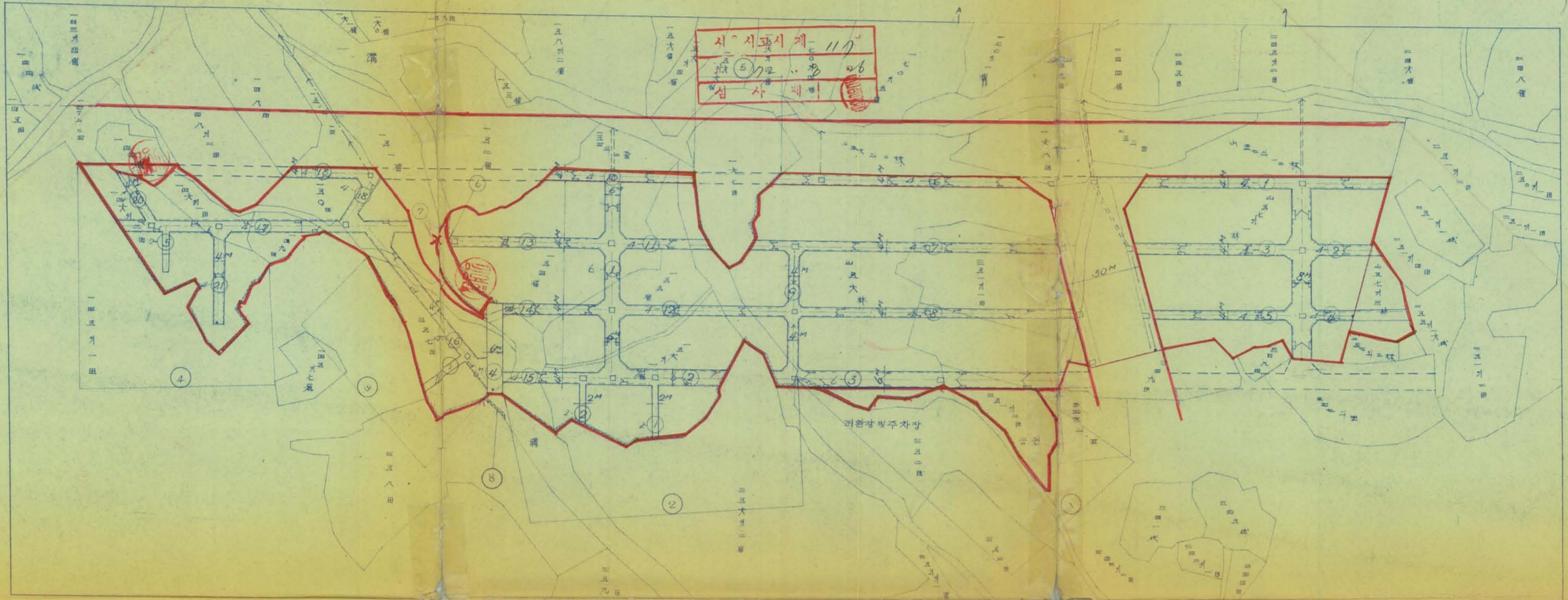
1. 시계 서동구 기역동 산 56-1 (9997평) 이
이하에 당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원안의 주택지 조성사업)
을 별첨 과세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시설결정 되었기
통보하기 사무취급에 차질이 없기 바랍기다.
첨부 : 과세문 사본 및 도면 부. 끝.

서울시코시 제 117 호
19. 7. 26 . 8 . 26
심 사 세

[Handwritten sig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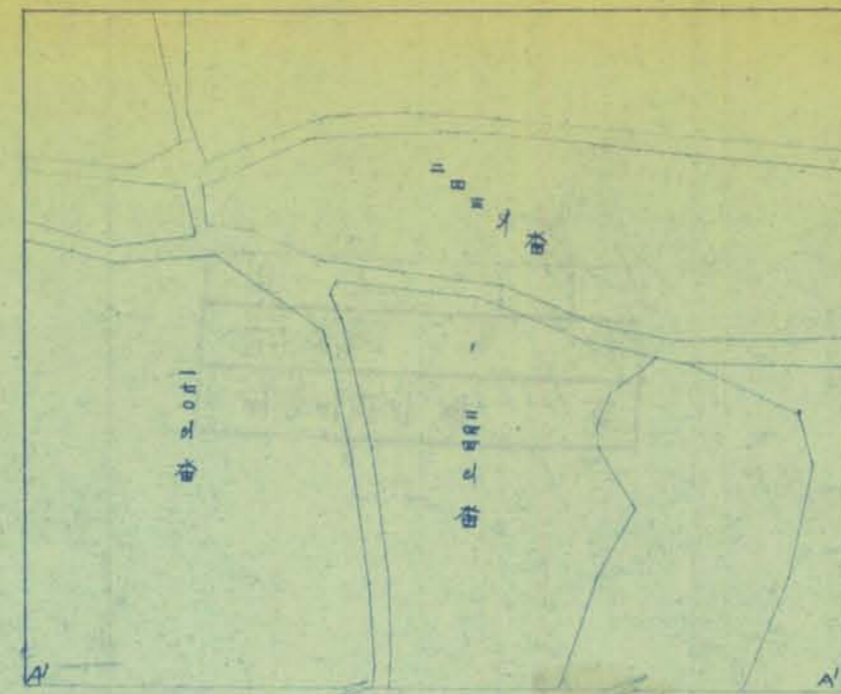
거여동 구허가 이주정착지 조성 가로망 계획도

S = 1 : 1,200



가로망 조서

종별	도로 No	연장 (M)	면적 (평)	종별	도로 No	연장 (M)	면적 (평)
30M		70	313.1	12	65	78.7	
소계		70	302.3	13	60	72.6	
8M		66	159.7	14	40	48.4	
소계		66	159.7	15	40	48.4	
6M	1	78	141.6	4M	16	72	87.1
	2	39	70.8		17	113	136.7
	3	114	206.9		18	20	24.2
	4	28	50.8		19	34	41.1
소계	259	470.1	20	21	25.4		
4M	1	105	127.0	21	36	43.6	
	2	26	31.5	소계	1,232	1,490.8	
	3	61	73.8	1	20	12.1	
	4	16	19.4	2	16	9.7	
	5	54	65.3	3	11	6.7	
	6	102	123.4	4	20	12.1	
	7	120	145.2	5	16	9.7	
	8	109	131.9				
	9	46	55.7	소계	83	50.3	
	10	56	67.8	합계		2,484.0	
	11	36	43.6				



기

기

토지조서

지번	지목	지적 (평)
산 56-1	림	1,950
356-1	밭	758
산 57-1	림	1,920
357	밭	1,316
154-1	밭	1,028
155	밭	554
산 57-3	림	240
357	밭	484
146-1	밭	141
146-3	밭	589
149	밭	112
150-2	밭	399
구거목도로부지		506
합계		9,997.0

협조지

수신 : 하수과장

제목 : 빛산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협조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17호 (1972. 8. 24)로 서울특별시
청기인 이주정책관리 조성을 위한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
결정된 지역에 대해 주택관리관으로 부러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는지 협의 하오나

2. 하수도 계획 및 하수시설 유지 관리상 지장
유무에 대한 귀과의 의견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P. 1

본건 내용 검토한바 다음사항이 미비하여 심의키 안하야
보완후 재협의 바랍니다.

1. 유역도 및 유량계산서

2. 하수도 매설 종단도 (관내 유속 0.8~2.5 m/sec 범위)

3. 하수도 구조물도 및 기설구거와의 연결부분의 처리 방안 (사유지
경유 및 보강)

하 수 과 장